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 1)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르면 시행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따른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 2)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

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업
무관련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행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가. 제1순위 :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나.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3.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택지개발지구가 속하는 시·군·구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4.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
 -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 다. 법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 라.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지정권자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5. 영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생략) <u><신설></u>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행자는 다음 각 목의 순위 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가. 제1순위 :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 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 지를 양도하는 자 나.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 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 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 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 게 우선 공급한다. 3.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하되, 택지개발지구가 속하는

시·군·구에서 영 제5조제2
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1
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4.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업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에게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
다.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
행자

다. 법 제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
양행정기관, 관할 지방자
치단체 등 관계기관

라.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
사를 위하여 지정권자 등
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
체

5. 영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7조제4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② ~ ⑩ (생략)	<u>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③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	---